#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도소 및 구치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(6급 2명, 7급 3명, 8급 12명, 9급 13명)을 증원하고,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지원국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#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10월 2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

## ●대통령령 제29208호

##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성장유망업종"을 "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"으로, "실업자를"을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(이하 이 조에서 "청년"이라 한다) 실업자를 추가로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6호"를 "제7호"로 한다.

제98조 중 "제95조제1항 및 제2항"을 각각 "제95조제1항 및 제3항"으로, "금액(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)"을 각각 "금액(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)"으로 한다. 제104조의4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
-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가.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
  - 나.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: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본다.

#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,

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·보완하여,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인

2018년 10월 2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

## ●대통령령 제29209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9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,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(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·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9조의3(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) ①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